

正祖의 朱熹 봉당론 독해와 활용

이 동 화*

1. 머리말
2. 엄정한 小人 분별의 강조
3. 소인을 판정하는 군주의 권한
4. 맺음말

1. 머리말

18세기 후반 재위한 正祖(재위 1776-1800)는 英祖(재위 1724-1776)를 계승해 蕩平政治를 추진한 '文治君主'로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¹⁾ 이에 더해 2009년 『正祖御札帖』(이하 『御札帖』)이 공개·번역되면서 당시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던 정조의 다른 측면들 또한 조명받았다.²⁾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본래 단절적으로 인식되었던 정조의 탕평정치와 19세기 勢道政治의 연계성에 주목한 연구들 또한 제출되었다.³⁾ 이는 단지 세도정치의 기원으로 정조를 평가하는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 1) 정조대의 전반적인 정치·사상적 배경을 다룬 연구 성과는 정옥자, 1999 『정조시대 연구 총론』 및 유봉학, 『정조시대 정치론의 추이』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가 대표적이다.
- 2) 박철상 외, 2011 『정조의 비밀 어찰, 정조가 그의 시대를 말하다』, 푸른역사.
- 3) 대표적인 공동 연구 성과는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2017 『정조와 정조 이후』, 역사비평사. 물론 이에 앞서 유봉학은 재위 말년 정조가 즉위 이후 대원칙으로 표방했던 右賢左戚의 정치론을 폐기했음을 강조하며 세도정치의 기원이 정조대부터 일어났다고 주장했다(유봉학, 2001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103-109면).

것에 머물지 않고 18세기 탕평정치 자체를 더 깊게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조가 朱熹(1130-1200)의 朋黨論을 어떻게 독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주희 봉당론과 정조가 주장한 蕩平의 단순한 연속 여부를 넘어 정조의 적극적 독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8세기 탕평정치의 구체적인 양상을 그 전후 시기 정치사상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조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주지하다시피 많은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정조의 朋黨·탕평에 대한 인식을 주희의 정치사상과 관련해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정조의 탕평론과 기존 주희 봉당론의 차이점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이태진은 정조가 기존에 존재하던 봉당정치 질서를 부정하고 국왕 자신과 臣民을 직접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고 이해했다. 그는 이러한 정조의 정치 인식을 ‘聖君專制主義’로 정의했다.⁴⁾ 박광용은 정조 연간을 峻論 주도의 ‘義理蕩平’ 시기로 설정하고, 정조가 주희의 봉당론을 당대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음을 강조했다.⁵⁾ 또한 김성윤은 정조의 탕평론을 ‘實事蕩平論’으로 규정하고, 是非明辨과 君主修身을 중시하는 보수적 세력의 ‘義理蕩平論’이 이와 같았다고 주장했다.⁶⁾ 이에 더해 박현모는 정조가 주장한 ‘聖王論’과 사대부 중심의 ‘聖學論’을 구분하며, 정조의 ‘성왕론’이 국왕의 적극적 행위들을 정당화했다고 평가했다.⁷⁾ 이상의 연구들

4) 李泰鎮, 1992 『正祖의 《大學》 탐구와 새로운 君主論 -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作送의 배경』,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正祖-儒學的 계몽 절대군주』 『한국사시민강좌』 13.

5) 朴光用, 1984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 『韓國史論』 10; 2003(초판 1985) 『탕평론의 전개와 정국의 변화』, 李泰鎮 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1990 『정조년간 時僻당쟁론에 대한 재검토』 『韓國文化』 11; 1994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82-218면; 1998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6) 金成潤, 1992 『蕩平의 原理와 蕩平論』 『釜大史學』 15·16; 1994 『正祖 哲學思想의 政治的 照明』 『釜山史學』 25·26; 1995 『正祖代의 文班職 運營과 政治構造의 變化』 『釜大史學』 19; 1997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7) 朴현모, 1999 『正祖의 정치현실 인식과 權道論』 『韓國學報』 97; 2000 『正祖의 蕩平정치 연구: 성왕론의 이념과 한계』 『韓國政治學會報』 34; 2001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3 『정조의 탕평정치 연구 2 : 『醫國論』의 관점에서 본 정조의 리더십』 『정신문화연구』 90.

은 기존의 주희 붕당론과 정조 정치사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데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⁸⁾

두 번째로 정조의 학문관 등 상대적으로 朱子學과 연계된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정옥자는 정조가 왕권 강화와 기성 질서의 유지를 위해 복고적·보수적 학문관을 지니고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고 奎章閣 설치·『尊周彙編』 편찬 등을 통해 이전 시대의 논리를 정리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⁹⁾ 유봉학 또한 정조의 주자학 정리를 당대의 사상적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가속화하려는 전향적 태도였다고 이해했다. 이에 더해 정조의 의리탕평론이 노론의리론의 정당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¹⁰⁾ 김문식은 정조가 宋學인 주자학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계승이라고 판단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조가 『尙書』 『洪範』과 『大學』을 군주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독해했다고 주장했다.¹¹⁾ 최성환은 주희의 정국운영론에서 皇極蕩平論과 붕당론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정조의 탕평정치는 주희·영조를 계승하고 노론 淸論의 시각도 수용한 의리탕평이라고 평가했다.¹²⁾ 백민정은 『經史講義』를

-
- 8) 정조의 정치사상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김준식은 '國家再造論'의 흐름 속에서 붕당론과 탕평론을 대비적으로 이해했다(金駿錫, 1999 『18세기 蕩平論의 전개와 王權』,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국학자료원, 263-266면. 국가재조론에 대해서는 金駿錫, 2003 『朝鮮後期 政治思想史 研究-國家再造論의 擡頭와 展開-』, 지식산업사 참조). 이에 더해 그는 정조가 주자학의 의리설과 신흥 시민세력 모두에게 의지하려는 양단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했다(같은 논문, 284-287면).
- 9) 鄭玉子, 1991 『朝鮮後期 知性史』, 一志社, 231-266면; 1993 『朝鮮後期 文化運動史』, 一潮閣, 60-163면;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一志社, 100-155면; 1999 앞의 논문; 2000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 일지사; 2001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 10) 유봉학, 2001 앞의 책; 2009 『개혁과 갈등의 시대-정조와 19세기』, 신구문화사, 37-49면과 115-209면.
- 11) 金文植, 1996 『朝鮮後期經學思想研究』, 一潮閣, 27-72면; 2000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해석사;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이후 군주 정조의 적극적 경학 독해를 다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본문에서 언급할 백민정의 연구 외 尹晶, 2007 『18세기 국왕의 '文治'사상 연구-祖宗 事跡의 재인식과 '繼志述事' 실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99-427면; 소진형, 2016 『조선후기 왕의 권위와 권력의 관계-황극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53-179면 등 다수.

중심으로 진행한 일련의 연구 논문들을 통해 정조가 모든 사람이 君師가 될 수 있다는 주자학적 수양론과 군주와 신하의 구분을 강조하는 인식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¹³⁾

이상 언급한 연구들을 통해 정조가 기존에 존재했던 주희의 정치사상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독해·활용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조 정치사상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희의 정치사상과 연속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 정조가 주희 봉당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앞서 언급한 정조 정치사상 내 주자학과 연계된 측면을 강조한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봉당·탕평론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들은 정조의 적극적 주자학 독해를 밝혀내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정조의 주희 봉당론 활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분석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본고는 『皇極編』 등의 자료를 통해 정조가 기존의 정치사상을 이용한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조의 적극적 독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조가 주희를 포함한 기존의 봉당·탕평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장에서는 정조가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 주희와 宋時烈(1607-1689)의 서간을 분석해 정조가 이해한 주희 봉당론의 일면을 확인할 것이다. 3장에서는 정조가 앞선 장에서 지적했던 주희 봉당론의 특성과 대립하는 측면 또한 주목했음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조가 주희의 봉당론을 단순히 계승하거나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맥락에 맞게 전유했다는 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12) 崔誠桓, 2009 『正祖代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5-8면과 107-110면.

13) 백민정, 2009 『『孟子』 해석에 나타난 正祖의 사유 경향 분석-『孟子講義』 御製條文 및 條對와 『鄒書春記』의 問答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34: 2010a 『『경사강의』를 통해 본 정조시대 학문적 논쟁의 양상』 『국학연구』 16: 2010b 『『論語』에 대한 正祖의 철학적 관점 분석-『論語講義』 御製條文 및 條對와 『魯論夏箋』 問答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62: 2010c 『정조의 사대부 인식과 정치철학적 입장 연구』 『韓國實學研究』 20: 2020 『정조의 경학 이해와 정치의 문제』 『한국문화』 89 외 다수. 『經史講義』 관련 연구사는 백민정, 2010d 『正祖의 '湖洛論爭' 주제에 관한 평가와 입장 분석: 『近思錄講義』와 『四書講義』 및 『日得錄』 등을 중심으로』 『韓國實學研究』 19의 들어가는 말을 참고할 수 있다.

이다. 이러한 정조 정치사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보수·개혁이라는 구도를 통해 18세기를 평가하는 틀을 넘어 당대 정치사상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된다고 생각한다.

2. 엄정한 小人 분별의 강조

정조가 주희의 저술들을 집대성한 ‘大一統’의 문자, 즉 소위 『朱子全集』을 편찬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⁴⁾ 그가 世孫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희 관련 서적들을 편찬하고 『朱子全集』까지 구상한 것은 孔子-朱子로 계승된 유학의 정통성을 자신이 계승하고 집대성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었다.¹⁵⁾ 이에 더해 정조는 지식의 유통과 경전 해석 등도 자신이 주도하고자 했다.¹⁶⁾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정조가 주자학 또는 주희의 견해를 일정 부분 비판한 것은 주자학 자체를 배격했다기보다 그 가치와 정합성을 높이려는 시도에 가까웠다.¹⁷⁾ 주희의 주석에 대해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하던 『經史講義』의 정조와 『鄒書春記』 등 후기 저작에서 주희를 옹호하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조의 두 모습은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정조의 적극적 독해는 주희의 저작에 대한 그의 이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 대표적인 기사는 다음과 같다. 『正祖實錄』 권52, 정조 23년 7월 16일 壬申 “諭赴燕使臣教曰朱夫子 卽孔子後一人也 … 嘗於燕間有暇 就一部大全 爲日用厚生之菽粟茶飯 略之爲會英 類之爲選統 鈔之爲百選 概之爲節約 集之爲會選 而竊又有契於春秋之旨 擬成大一統文字.”

15) 정조의 주희 관련 서적 편찬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김문식, 2000 앞의 책, 제5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16)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으나 지식의 유통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배우성, 2015 『정조의 지식 보급과 유통 전략』 『독서와 지식의 풍경-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 돌베개를 참고할 수 있다.

17) 金文植, 1996 앞의 책, 56면; 백민정, 2020 앞의 논문, 7면 등.

18)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지적은 대표적으로 백민정, 2009 앞의 논문, 169-171면과 207-209면.

【金近淳(1772-?) - 필자 표시】『與留丞相書』에, “君子와 小人의 구분을 신중히 살펴 인물의 진퇴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臣 김근순이 삼가 사 람을 등용하는 법의 근본을 살펴보건대 仁·明·武라는 三德을 벗어나지 않습 니다. 宋(960-1279)의 신하인 司馬光(1019-1086)이 일찍이 이로써 그 임금에게 고 하였으니 진실로 실체를 통달한 논의입니다. 지금 주자의 이 말을 살펴보니 목 목히 은연중에 합치되는 바가 있는 듯합니다.

【정조-필자 표시】 경전을 읽고 의리를 말할 때 억지로 여러 설을 끌어모아 엉 터리 주장을 세우는 행위를 매우 피해야 한다. 溫公(사마광을 지칭)의 인·명· 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설이고, 주자의 『與留丞相書』는 또 그 자체로 하나의 설 이다. 어찌 반드시 같은 점을 비교하고 다른 점을 끌어당겨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절로 어리석은 사람이 꿈 이야기하는 상태에 이르는가?¹⁹⁾

내가 두 문집 중 心法이 조응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뽑으니 書 약간 편, 封事·奏 疏 약간 편, 雜著·序·跋 약간 편, 詩·賦 약간 편이었다. 이를 합해 한 책으로 만 들고 『兩賢傳心錄』이라 이름 붙였다. 책이 완성되어 내가 읽어 보고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과연 그렇구나! 두 현인의 심법은 차이가 없도다. … 『與魏元履書』를 읽으 면 『答俞武仲書』가 바로 거기에서 전수된 것임을 알 수 있고, 『寄朴和叔書』를 읽으 면 그 내용이 『與留丞相書』에서 전수된 것임을 알 수 있다.”²⁰⁾

위 내용은 정조가 주희의 저작을 독해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은 1794년(정조 18)에 선발된 抄啓文臣을 중심으로 진행된 抄啓故寔 중 『與留丞相書』에 대한 김근순의 견해와 정조의 批答이다.²¹⁾ 『與留丞相書』는 주희

19) 正祖, 『弘齋全書』 권130, 『故寔』 2 “與留丞相書曰 謹察君子小人之分而公進退之 臣近淳謹 按用人之本 不出仁、明、武三德 宋臣司馬光 嘗以此告於其君 眞達體之論也 今按朱子此言 竊有所默契而暗合者 … 讀經傳說義理 切忌湊合杜撰 溫公之仁明武 自是一說 朱子之與留 相書 自是一說 何必較同挈異 將無作有 自歸於癡人說夢耶.”

20) 正祖, 『弘齋全書』 권179, 『羣書標記』 1, 〈兩賢傳心錄〉, 親撰後序 “予爲鈔兩集中心法照應 者 書若干篇、封事奏疏若干篇、雜著序跋若干篇、詩賦若干篇 合爲一書 名曰兩賢傳心錄 書既成 予讀而曰有是哉 兩賢心法之無不同也 … 讀與魏元履書 則托其傳於答俞武仲書可知 讀寄朴和叔書 則得其傳於與留丞相書可知.”

21) 초계고식에 대해서는 당시 이에 참석했던 洪奭周(1774-1842)·柳台佐(1763-1837)를 중 심으로 분석한 김문식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金文植, 1996 앞의 책, 156-159면; 2019

의 정치사상을 잘 보여주는 서간으로, 그에 대한 조선 시기 지식인들의 이해는 해당 인물의 붕당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²²⁾ 여기서 김근순은 주희와 사마광의 견해가 서로 합치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정조는 여러 가지 학설을 자의적으로 비교하는 이해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조의 비판은 『朱子大畧』을 대상으로 진행된 초계고식 내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특히 인물의 是非를 구분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던 역사적 사례를 비판하는 「與留丞相書」의 논조와 인물의 포용을 용인하는 다른 서간 사이의 차이를 질문했던 具得魯(1771-?)를 강하게 꾸짖었다.²³⁾ 이러한 주희 서간 내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은 서간, 語錄 등 상대방과 협동 작업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질의응답형 자료”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정조도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구득로에게 주희의 발언이 다를지라도 그 의리는 동일하며, 군자와 소인은 본래 섞이기 어렵지만 함께 등용할 때도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小人’이 자의적으로 주희의 의도를 파악하는 행위를 경계했을 뿐이었다.²⁵⁾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인용문인 1795년(정조

『정조대 柳台佐의 抄啓文臣 활동』 『東洋學』 76. 초계문신 제도에 대해서는 정옥자, 2001 앞의 책, 95-184면 참조.

22) 「與留丞相書」에 대한 대표적인 한국의 연구 성과는 鄭萬祚, 1992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90-95면.

23) 正祖, 『弘齋全書』 권131, 「故寔」 3 “與留丞相書曰 前輩有論嘉祐、元豐兼收並用異趣之人故當時朋黨之禍不至於朝廷者 世多以爲名言 某嘗謂此乃不得已之論 臣得魯竊惟朱子與張南軒書云所謂元豐大臣 當與共事 蓋實見其可而有是言 … 前後之訓 若是相反 何也 … 【正祖-필자 표시】 爾不見魯論二十篇 對門弟子之問也 所指而言者 各有不同耶 觀於問仁問孝之對 尤易領會 今於朱夫子往復知舊之答問看之 亦當如右 南軒、東萊、留丞相諸人答語 與語類所在 言雖殊而義則一致 薰蕕固難相混 鑿柄時或竝容 何敢以小人之心 妄有說難於這問後須切戒之.”

24) 이치키 쓰유히코(市來津由彦)는 이러한 “질의응답형 자료”를 분석해 주희 문인집단의 형성을 사후의 시선이 아니라 발생 당시의 시점에서부터 계기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특히 市來津由彦, 2002 「序說」 『朱熹門人集團形成の研究』, 東京: 創文社, 15-17면.

25) 앞서 인용한 구득로에 대한 정조의 비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비답도 유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正祖, 『弘齋全書』 권131, 「故寔」 3 “黃直卿書曰 才得一說 終身不

19)에 작성된 『兩賢傳心錄』의 「親撰後序」는 주목할 만하다.²⁶⁾ 여기서 정조는 앞서 김근순·구득로에게 했던 발언과 일정 정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서문에서 정조는 주희와 송시열 사이 道의 전수를 강조하며 특정 저술들 사이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與留丞相書」는 송시열이 朴世采(1631-1695)에게 보낸 「寄朴和叔書」와 유사한 의리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처럼 정조는 주희 서간들 사이 존재하는 해석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 독해를 모든 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정조는 ‘小人’이라는 용어를 閣臣에게 사용하거나 朱夫子, 즉 주희의 평생 공부를 다 보았느냐고 지적하며 신하들의 적극적 해석을 제어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정조가 어떤 측면에 주목해 주희의 「與留丞相書」와 송시열의 「寄朴和叔書」를 연계해 이해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與留丞相書」는 정조가 주희의 서간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모아 1794년(정조 18)에 간행한 『朱書百選』에도 수록되어있다.²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朱書百選』에 수록된 「與留丞相書」까지 함께 참고하며 「寄朴和叔書」와 비교하고자 한다.

저들 소인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뛰어나 반드시 스스로 그 자취를 덮어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君子는 그 공적인 마음과 올바른 도를 믿고서 잘못을 덮는 일이 없어 왕왕 도리어 (소인에게) 이끌려 黨人으로 지목을 받습니다. ... 승상께서는 또한 그 자신이 스스로 군자의 당에 들어가 저들 소인들로 하여금 서운한 감정

移者 若非上智 卽是下愚也 臣浚欽竊惟孔子生而知之者也 故其言無初晚之可擇 朱子學而知之者也 故其言不能無前後之異同 卽其前後異同之跡 而可見前後造詣之淺深 ... 【正祖-필자 표시】 爲學之方 須有真正經歷真正知見真正工夫 方到上達地位 爾觀朱夫子平生本末 如何是安心覓心 如何是格物致知爲先 如何是居敬窮理交須 只管掇拾文字 較挈初晚 欲論大賢獨覺其進之妙 非愚則妄也.”

26) 『兩賢傳心錄』의 서문은 1774년(영조 50년)·1795년, 두 차례 작성되었다. 여기서는 『弘齋全書』 권179, 「羣書標記」 1에 수록된 1795년 작성된 서문을 인용하였다. 정조의 『兩賢傳心錄』 편찬에 대해서는 김문식, 2000 앞의 책, 251-262면.

27) 『朱書百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金南基, 2000 『『朱書百選』·『雅誦』 解題』, 『朱書百選·雅誦』(奎章閣資料叢書 儒學篇 영인본), 서울大學校 奎章閣; 위의 책, 263-273면; 김준석, 2000 『『주서백선(朱書百選)』의 번역에 붙임』, 朱子思想研究會 옮김, 『朱書百選』, 해안 참고, 최근의 연구로는 강문식, 2020 『정조의 朱子學 연구와 『朱書百選』 편찬』, 『한국문화』 80이 제출되었다.

을 오래 지니게 하고 禍를 만드는 것을 깊게 할까 걱정하십니다. 또한 조금씩 일부러 미혹되고 어지러우며 어둡고 어긋난 태도로 그들을 조정하고 위무하여 도리어 그들의 기세가 커지고 뜻이 굳건해지게 하였습니다. (소인들이) 방약무인해져 감히 벼슬을 구하는 章奏에서 거리낌 없이 선한 이들을 무함하는 말을 지어내도 조정이 또한 그것의 사실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²⁸⁾

대저 나는 尹(尹宣擧[1610-1669]를 지칭)에 대해 그가 鏞(尹鏞[1617-1680]를 지칭)에게 赤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네. 윤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논쟁할 때 希仲(윤휴를 지칭)은 고명해서 잘못했다거나 소탈해서 잘못된 것에 불과하다고 혹 말하는 경우가 있었고 나와 함께 잘 때는 힘써 오직 그를 높이는 데 바빴네. 【여기에 대해서는 명문이 없으니, 누가 믿어 주겠는가.】 그 아비의 뜻이 이와 같으니, 그 아들(尹拯[1629-1714]을 지칭)이 지금 이러한 것은 이치상 당연하네. ... 그가 시종 휴에 의해 잘못된 것이 이와 같으니, 휴를 중주로 삼았던 한 조목에 대해서는 또한 시종 단호히 배척해야만 하네.²⁹⁾

첫 번째 인용문은 주희가 宰相이었던 留正(1129-1206)에게 보낸 『與留丞相書』 중 일부분이다. 정조가 편집한 『朱書百選』에 수록된 『與留丞相書』 중 가장 앞에 수록된 서간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희는 소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민첩하지만, 군자들은 이에 서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

28) 『兩賢傳心錄』 권1, 『與留丞相書』, 8a-8b “彼小人之巧於自謀者 必將有以自蓋其迹 而君子恃其公心直道 無所回互 往往反爲所擠而目以爲黨 … 丞相又慮此身自陷於君子之黨 而使彼之蓄憾久而爲禍深也 又稍故爲迷亂昏錯之態以調柔之 反使之氣豪意健 旁若無人 敢於干祿之章 肆爲誣善之語 而朝廷亦不之問也.”(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896-v.1-4) 해당 부분의 국역은 (朱子思想研究會 옮김), 위의 책, 177-180면. 해당 서신의 원문은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二)』, 『與留丞相書 四月二十四日』, 朱傑人 外 主編, 2002 『朱子全書』 21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243-1244면. 또한 『朱書百選』 권3, 『與留丞相』, 17b-18b도 참고할 수 있다. 이하 인용할 정조의 편집본과 해당 저자의 문집에 수록된 글 사이 글자의 차이가 일부 있으나 문장의 해석이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므로 편집본을 그대로 인용함. 이하 『晦庵先生朱文公文集』은 해당 판본을 사용함.

29) 앞서 살펴봤듯이 정조는 『兩賢傳心錄』의 서문에서 해당 서간을 『寄朴和叔書』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해당 서적의 목록과 본문에는 『與朴和叔書』와 『答朴和叔書』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兩賢傳心錄』 권5, 『與朴和叔書』, 6b-9b “蓋愚於尹 明知其有赤心於鏞矣 其爭辨於稠中 時時或有希仲不過高明之過 疎脫之過之語 及其連枕時 懇懇惟尙 不遺餘力 【此無明文 誰復信之】 其親意如此 其子之今如此 理勢然也 … 彼終始爲鏞所誤者如此 宗鏞一款 則亦終始痛斥之耳.” 해당 서신의 원문은 宋時烈, 『宋子大全』 권68, 『與朴和叔』이다.

하고 있다. 따라서 소인들이 세를 키우기 전에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당시 재상이었던 유정은 소인들을 위무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희는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소인들의 힘만 키워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부분은 앞서 구득로가 지적했듯이 인물의 시비 판정을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군자의 당에 들어가 철저하게 소인들을 배격하는 것이었다.

다음 인용문은 정조가 『與留丞相書』와 유사하다고 인식한 송시열의 서간 중 소인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한 대목이다. 여기서 송시열은 윤희를 소인으로 규정하고 그 소인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 또한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는 대상은 윤선거·윤증 부자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與留丞相書』에서 유화적인 태도가 오히려 소인들의 형세만 도울 뿐이라는 주희의 견해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정조가 『與留丞相書』의 해석에서는 엄정한 군자와 소인의 분별을 강조하고자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소인을 두둔하는 태도는 단지 소인들의 형세를 돕는 데 불과하거나 함께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였다.

『兩賢傳心錄』의 서문에서 정조는 소인들이 송시열을 공격하기 위해 위로 올라가 주희·공자까지 무함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³¹⁾ 주희의 경전 주석을 일정 정도 비판적으로 독해했던 윤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³²⁾ 정조는 송시열의 神主를 잠시 宋洞에 모시려고 했으나 윤희가 살던 浦洞

30) 송시열의 윤희 비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李建昌, 『黨議通略』 『肅宗朝』, 37-43면(1912 朝鮮光文會); 李銀順, 1988 『朝鮮後期黨爭史研究』, 一潮閣, 48-55면; 김용흠, 2010 『肅宗代 前半 懷尼是非와 蕩平論-윤선거·윤증의 논리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48, 77-84면 등을 참고할 수 있다. 『黨議通略』의 국역은 이덕일·이준영 옮김, 2015 『당의통략』, 자유문고; 이근호 옮김, 2012 『당의통략』,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용흠 옮김, 2020 『당의통략』, 아카넷.

31) 正祖, 『弘齋全書』 권179, 『羣書標記』 1, 〈兩賢傳心錄〉, 親撰序 “先生之一言一事 一如朱夫子而無差 則毀先生而誣之者 不得不並毀朱夫子而誣之 不知其自抵於誣孔夫子之科 斯文之亂 吁其極矣.”

32) 윤희의 경전 해석에 대해서는 정호훈, 2004 『朝鮮後期 政治思想 研究-17세기 北人系 南人을 중심으로-』, 혜안, 249-277면이 대표적인 연구 성과다.

과 이어져 있으므로 증지시켰다고 발언하기도 했다.³³⁾ 송시열·윤휴를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정조의 태도와 관련해 정조가 편찬을 명한 『皇極編』 또한 주목할 만하다. 『皇極編』은 宣祖(재위 1567-1608) 연간 東·西人 분당으로부터 1772년(영조 48) 少論三大臣(李光佐[1674-1740], 崔錫恒[1654-1724], 趙泰億[1675-1728])의 복관까지 봉당의 연혁을 편년체로 기록한 저술이다.³⁴⁾ 이 중 권5·6은 송시열과 윤휴의 대립 그리고 윤휴와 윤선거의 관계를 둘러싼 많은 논쟁을 수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윤증이 직접 윤선거와 윤휴의 관계를 변론한 상소와 그에 대한 執義 金一夔(1653-?) 등의 반론을 들 수 있다.³⁵⁾ 해당 상소에서 윤증은 부친인 윤선거가 초기에 윤휴와 사이가 좋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후에는 절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윤선거가 윤휴를 바로잡아주려다 실패했다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일기 등은 윤선거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뒤로 소인을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소위 소인에게 유화적

33) 正祖, 『弘齋全書』 권178, 『日得錄』 18, <訓語> 5 “宋文正致祭時 欲暫奉祠版於宋洞云 而連岡之地 卽尹鑄所居浦洞也 先正一生所深惡而痛斥者鑄也 先正之靈 其肯安於是乎 予飭令勿往者此也.” 정조가 沈煥之(1730-1802)에게 보낸 『御札帖』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윤휴가 거주하던 지역은 ‘狗洞’으로 명시되어 있다. 『御札帖』 1帖, 126 “前書中先正致祭處所 欲以龍營爲之 萬不當千不可 所謂宋洞 必是泮人鄭哥書齋 而且況曾朱壁立四字 先正之筆跡宛然 … 然而宋洞距狗洞不遠 未知醜正之徒 能無侮賢之說耶.”(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편, 2009 『정조어찰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51면. 서찰의 숫자는 해당 번역본을 따랐다)

34) 현재 『皇極編』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남대학교 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종합목록[http://www.nl.go.kr/nl/dataSearch/data_kor.jsp] 참고). 『皇極編』 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1책(奎4878)은 卷13에 해당하는 零本으로 유일하게 영조 4년(1728)부터 영조 48년(1772)까지 봉당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제 참고).

35) 『皇極編』 권6, 22-23면 “庚午十六年秋 大司憲尹拯疏略曰 臣於宋時烈 自少以師事之 不幸以書札間事 橫生鬧端 以致數年紛紜 … 尹鑄 亦先臣之所嘗善 禮訟之初 先臣已斥其失身告戒不從 終至相絕 至於末梢 無狀尤不足論 向來疏章 每以賊臣爲扶護鑄 抑勒爲說 無所不有 … 執義金一夔等啓略曰 拯之父宣舉 初是尹鑄 及時烈怒而欲絕 則宣舉乃作兩是之論 且鑄死之後 拯往見鑄婿 再三嗟傷 比諸士禍 此實搢紳之所共聞也.”(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250-34-v.1-6)

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많은 논란의 소지를 지닌 문제였다. 정조가 『皇極編』 내 송시열·윤휴 그리고 윤선거의 관계에 대한 사례들을 다수 수록했다는 사실은 그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皇極編』 내 긴 분량으로 수록된 司果 李世德(1662-1724)의 原情 또한 이와 관계되어있다. 이세덕은 1717년(숙종 43) 스승인 윤선거·윤증 부자를 변호하기 위해 承政院을 거쳐 상소를 올리고자 했지만 여러 차례 저지당하자 마침내 擊鼓를 해 원정을 바쳤다.³⁶⁾ 해당 원정의 주요 내용은 송시열의 윤선거·박세체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송시열이 주회를 계승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우선 이세덕은 윤선거의 유희에 대한 태도가 공적인 마음에서 나온 데 반해, 송시열의 유희 비판은 사적인 원한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³⁷⁾ 이는 앞서도 살펴보았던 소위 소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그는 송시열이 주회를 본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나고 반문하며 송시열이 자의적으로 주회의 뜻을 해석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³⁸⁾

긴 분량으로 『皇極編』에 수록된 이세덕의 원정은 앞서 살펴본 『兩賢傳心錄』의 서문과 연계해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정조는 해당 서문에서 주회의 「與留丞相書」와 송시열의 「寄朴和叔書」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두 서간은 소인뿐만

36) 『承政院日記』 503책, 숙종 43년 7월 7일 己未 “政院啓曰 前司果李世德 來呈疏 概蓋爲其師尹拯父子伸辨事也 頃者傳教內 尹宣舉、尹拯事 朝家處分得宜 是非已明 此非一時硬定之比 元無可辨之端 … 故臣等 謹遵聖教 不爲捧入 則世德逐日來到 終日相持 必欲呈納 無意退去 雖有勿復煩稟之教 一向撕捱 了當無期 此上疏 何以爲之 惶恐敢稟 傳曰 勿爲捧入.”; 『肅宗實錄』 권60, 숙종 43년 9월 3일 甲寅 “始世德爲其師尹拯父子 上疏伸下 政院以有禁令却之 世德必欲登徹 爭之十餘日 政院不得已啓稟 上命勿捧 世德遂擊鼓就對 供辭中盡謄其疏 凡萬餘言.” 이세덕이 본래 올리고자 했던 상소는 尹拯, 『明齋年譜後錄』 권2에 「前持平李世德疏」로 수록되어있다.

37) 『皇極編』 권8, 7면 “噫 自禮訟以來 鑄之齟齬時烈極矣 時烈之所以攻斥鑄者 不有餘力 宣舉則斥之雖嚴 不至如時烈之已甚者 正以此出於公心 而彼由於私怨也.”

38) 『皇極編』 권8, 29면 “夫今之所以尊時烈者 則曰法朱子也 明大義也 忠孝廟也 其所以斥宣舉則曰背朱子也 毀大義也 掩己累也 而其曰掩己累者 卽所謂誣聖祖之語本也 噫 時烈所以法朱子者 果何事也矣 … 噫 時烈既自以爲讀朱子書 而有所見 則一種無識之輩 孰不以爲誠然而矣身未知朱子之擅役王人 果見何書耶.”

아니라 소인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까지 함께 비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상대적으로 소인들을 포용하자고 주장하는 調停論은 제기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이세덕은 송시열의 윤희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지나쳤으며, 그가 주희를 계승했다는 점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는 송시열을 비판하다가 주희까지 무함한다는 정조의 발언을 연상시킨다. 이상에서 인용한 『皇極編』 대목들은 소위 소인으로 평가받는 윤희를 엄중하게 비판하지 못한 윤선거·윤증 부자와 관련된 논란을 상세하게 수록해 주희와 송시열의 계승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소인을 판정하는 군주의 권한

정조는 주희의 발언이 상황에 따라 다를지라도 그 의리는 동일하며, 군자와 소인은 본래 섞이기 어렵지만 함께 등용할 때도 있다고 구득로에게 발언했다. 앞장에서 정조가 주희의 저작들을 독해한 방식은 군자와 소인이 본래 섞이기 어렵다는 견해에 가까웠다. 이처럼 소인은 물론 소인을 포용하자고 주장하는 인물들까지 배척할 경우 소인의 교화 가능성은 없어진다. 하지만 상대방과 협동 작업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질의응답형 자료”에 해당하는 주희 서간의 경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서간들 사이 차이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규장각 각신들은 물론 그들의 성급한 학문 태도를 꾸짖었던 정조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정조가 언급한 주희 昉당론의 특성 중 후자에 해당하는 군자와 소인의 공존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金近淳-필자 표시】『題趙清獻事實後』에서 “熙寧(1068-1077, 북송 神宗[재위 1067-1085]의 첫 번째 연호)·元豐(1078-1085, 북송 신종의 두 번째 연호) 시기 曾文肅, 趙清獻, 張丞相은 또한 章惇(1035-1105)·蔡京(1047-1126)과 같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신 김근순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挺之(趙挺之[1040-1107]를 지칭)는 당초에 채경을 통해 출신했습니다. … 그가 장돈·채경과 다른 점은 주장에 조금

완급의 차이가 있었던 데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주자께서 공공연히 그의 사람됨을 인정한 것은 혹 따로 마음속에 의리를 정밀히 궁구하신 바가 있어서입니까?

【정조-필자 표시】 주자께서 이미 “장돈·채경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사특함과 바름의 구분을 볼 수 있다. 만약 당초에 채경을 통해 출신한 것을 허물로 삼는다면 龜山(楊時[1053-1135]를 지칭)의 출처 또한 道統의 전수에서 우열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³⁹⁾

하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희령·원풍 연간의 소인들은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희령·원풍 연간의 법에 대해서는 좋은 것까지 모두 반드시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 당시 두, 세 명의 大臣이 애당초 그 득실과 이해를 천천히 따져 보지도 않고 오직 王安石(1021-1086)이 만든 법이라는 이유로 철폐하기에 급급하였으니, 저들 무리도 집요하였지만 이쪽 또한 마땅함을 잃은 행동이었다.”⁴⁰⁾

위 내용은 정조가 주희의 저술에서 소인들을 다루는 방식을 어떻게 읽어냈는지 보여주고 있다. 김근순은 『題趙清獻事實後』에서 주희가 조정지와 新法을 추진한 대표적 인물들인 장돈·채경을 구분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정은 北宋(960-1127) 徽宗(재위 1100-1126) 시기 元祐更化(元祐는 1086-1094년으로 북송 哲宗[재위 1085-1100]의 첫 번째 연호)로 집권했던 舊法黨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인물로, 채경이 천거해 尙書右僕射가 되기도 했다.⁴¹⁾ 따라서 엄밀

39) 正祖, 『弘齋全書』 권130, 『故寔』 2 “題趙清獻事實後曰 熙、豐之曾文肅、趙清獻、張丞相又與章、蔡不同也 臣近淳竊惟挺之初因蔡京進身 … 其貳於章、蔡者 不過言議之稍有緩急則朱子之顯示許可者 抑別有精義之蘊耶【正祖-필자 표시】 朱子旣明言與章、蔡不同 邪正之分 可見也 若以初因蔡京爲累 則龜山之出處 亦可軒輊於道統之傳歟.”

40) 正祖, 『弘齋全書』 권162, 『日得錄』 2, 〈文學〉 2 “教曰 熙、豐小人 不可不盡去 而熙、豐之法 則善者不必盡變 … 當時二三大臣 未始舒究其得失、利病 而惟以法朶於安石者 汲汲擺撤 彼則執拗 而此亦乖當.”

41) 이러한 조정지의 행적은 기본적으로 『宋史』 권351, 『列傳』 110, 〈趙挺之〉, 11093-11094면 참조(脫脫 等撰, 1977 北京: 中華書局出版). 추가적으로 본고는 조선 후기 지식인의 독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구법당·신법당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 참여자들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히라타 시게키(平田茂樹)는 원우 구법당이 통일적 정치색이 열은 집단이었으며, 서로 구별되는 소집단들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했다(平田茂樹, 2012 『宋代の朋黨形成の契機について』, 『宋代政治構造研究』, 東京: 汲古書院, 180-184면). 이에 더해 그는 구법당을 朔黨·洛黨·蜀黨으로 구분하는 종래 견해가 당시 정치적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宋代の言路』 같은 책, 214-215면). 개인적 친분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 중 신법당을 강하게 비판

한 시비 판정에 따르면 채경과 함께 신법당, 즉 소인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주희는 해당 저술에서 조정지의 手記를 보고 그가 채경과 다른 논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았다며 같은 수준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⁴²⁾ 앞서 소인을 일정 정도 두둔하는 재상 유정의 태도를 비판하며 엄정한 군자·소인의 분별을 강조했던 주희가 여기서는 소인 내에 구분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러한 주희 저술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정조가 구법당의 신법당에 대한 지나친 공격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기사다. 일정 정도 왕안석의 성과를 인정하는 정조의 입장은 그의 경세론을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도 언급되었다.⁴³⁾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 살펴본다면 왕안석으로 대표되는 신법당이 만들어낸 제도 중 좋은 것은 선별해내야 한다는 정조의 견해는 소인 내에서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희의 견해와 유사하다. 이에 호응하듯이 정조는 『宋史箋』의 편집 방침과 관련해 군자가 악을 미워하더라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⁴⁴⁾ 이상과 같이 소인 내에서 정밀한 시비 판정을 수행하는 것을 주희 정치사상의 요소 중 하나로 인정한다면 이제 그 판단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된다.

주희가 陳俊卿(1113-1186)에게 보낸 「與陳侍郎書」의 해석을 둘러싼 김근순과

하는 집단을 주도했던 劉摯(1030-1098)의 黨人으로 조정지가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현실 정치관계의 복잡함과 주희 발언의 배경을 보여준다(『宋代の言路』 같은 책, 222-228면). 또한 원우 시기 봉당 간 대립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羅家祥, 2002 『元祐新、旧党之爭』, 『朋党之爭与北宋政治』,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참조.

42)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五)』, 『題趙清獻事實後』, 3914면 “國家自熙、豐、元祐以來 人才政事 分爲兩塗 是此者非彼 鄉左者背右 既不可得而同矣 而於其同之中 又有異焉 則若元祐之朔黨、洛黨、川黨 而熙、豐之曾文肅、趙清獻、張丞相 又與章、蔡自不同也 … 得觀趙公手記所興蔡京異論本末 蓋嘗三復而歎公之不幸 … 而考其平生 質厚清約有過人者 則又知其必不肯爲蔡京之淫侈導諛 以蠱上心而納之於有過之地也 是則雖曰同出於熙、豐 而其邪正得失之間 豈可同年而語哉.”

43) 박현모, 2001 앞의 책, 246-251면이 대표적이다.

44) 正祖, 『弘齋全書』 권162, 『日得錄』 2, 〈文學〉 2 “宋史箋 既命重訂 凡紀、傳、序、論之或涉苛隘迫切者 一皆塗改 教曰褒貶謹嚴 雖即修史之法 而古人瑕疵 不但吹寬之有害忠厚 刻論窮議 恣快其意 亦近於酷吏按囚 此豈仁人之用心哉 … 君子之惡惡 須存惻隱愍矜之意 無爲已甚而亂 斯爲得之耳.”

정조의 대화는 군주인 정조가 그 주체를 누구로 상정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해당 서간은 정조가 편집한 『朱書百選』에도 수록되어있다.⁴⁵⁾ 주요 내용은 주희가 당시의 큰 문제로 獨斷·講和·國是를 제시하고 군주의 마음을 바로 잡는 데 힘쓰도록 진준경에게 주문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주희는 ‘독단’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자 군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까지 발언했다.⁴⁶⁾ 따라서 해당 서간을 읽고 군주의 독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언하는 김근순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독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조는 주희의 발언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의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결국 군주가 홀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堯의 사례까지 제시했다.⁴⁷⁾

이에 더해 정조는 金啓溫(1773-?)과 주희의 서간 중 하나인 「答張敬夫書」의 해석을 논하면서 지나친 수탈 등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신하, 즉 소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군주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⁴⁸⁾ 이는 해당 서간 중 주희가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가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을 소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이

45) 『朱書百選』 권1, 「與陳侍郎」, 1b-6a(2000 『朱書百選·雅誦』奎章閣資料叢書 儒學篇 영인본, 서울大學校 奎章閣). 해당 부분의 국역은 朱子思想研究會 옮김, 2000 앞의 책, 43-49면. 해당 서신의 원문은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二)』, 「與陳侍郎書」, 1084-1088면. 해당 서간에서 제시된 國是와 公論의 의미를 李珥(1536-1584)의 인식과 비교한 연구로 김경래, 2012 「조선 공론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李珥의 公論 개념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105가 제출되었다. 주희 당대 국시와 공론에 대해서는 위잉스(이원석 옮김), 2015 「국시」 고찰, 『주희의 역사세계』 상, 글항아리를 참조.

46) 『朱書百選』 권1, 「與陳侍郎」, 2a “蓋講和之計決 而三綱頽萬事隳 獨斷之言進而主意驕於上 國是之說行 而公論鬱於下 此三者其大患之本也.”

47) 正祖, 『弘齋全書』 권130, 「故寔」 2 “與陳侍郎書曰 獨斷之言進 而主意驕於上 臣近淳謹按爲人君之道 地處常患其莫尊而不患其或卑 陽剛常患其太亢而不患其或屈者 … 人君苟不體驗於斯 則唐德宗之獨斷 不能用陸贄之忠君 宋神宗之獨斷 不免爲安石之誤國 可不懼哉【正祖-필자 표시】豈不曰謀貴廣而斷欲獨乎 如爾言者 執其兩端 用其中 大舜亦可嫌於獨斷 而兩造兩是之乎.”

48) 正祖, 『弘齋全書』 권133, 「故寔」 5 “答張敬夫書曰 聚斂之臣 誠可憎疾 爲國家者 明道正義 但使之知吾節用裕民之意而不至於病民矣 … 【正祖-필자 표시】百里奚愚虞而智秦 封德彝佞於隋而忠於唐 人才成就 亦惟在人君用之之如何耳 聚斂之臣 其志則雖不可取 而其才則未必是不可用 抑其志而不使之少肆 知其才而任之於可用 則可使爲良臣 可使爲經濟之臣.”

교화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정조가 해석한 결과였다.⁴⁹⁾ 이에 대해 정조는 주희가 소인들을 아꼈기 때문이 아니라 군주가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렇게 주장했다며 찬탄했다.⁵⁰⁾ 이처럼 정조는 주희의 서간 내에서 소인을 변화시키는 군주의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목들을 강조했다. 정조가 해당 대화에서 소인에서 변화한 사례로 제시한 百里奚(?-?)와 封德彝(본명은 封倫이며 덕이는 字 다, 568-627) 중 봉덕이는 영조의 『與留丞相書』 해석과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⁵¹⁾

1740년(영조 16) 영조는 試讀官인 李昌誼(1704-1772)와 앞에서 살펴본 주희의 『與留丞相書』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신의 논리에 따라 군주 중심의 견해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소인인 채경 또한 봉덕이처럼 변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당시 군주인 휘종의 능력 부족으로 그렇게 될 수 없었다. 이는 『與留丞相書』에서 주희가 유정에게 말한 본래 맥락을 일정 정도 벗어난 것이었다. 해당 서신에서 주희는 유정에게 군자당 내에 소인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소인의 당 내부에 군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지는 않았다. 더 나아가 소인이 군자로 변할 가능성은 영조 자신이 부연한 것일 뿐이었다. 영조는 1746년(영조 22) 주희의 『與留丞相書』와 歐陽修(1007-1072)의 『朋黨論』에 대해 논하면서 다시 봉덕이를 소인에서 교화된 인물의 대표 사례로 언

49) 해당 서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二)』, 『答張敬夫』, 1331면 “聚斂之臣 誠可憎疾 爲國家者明道正義以端本於上 而百官有司景從響附於下 則此輩之材寸長尺短亦無所不可用 但使之知吾節用裕民之意而謹其職守 則自不至於病民矣.”

50) 正祖, 『弘齋全書』 권133, 『故寃』 5 “夫朱夫子於聚斂之臣 何惜而爲此訓乎 特言人君用人之道 亦當如此云耳 大哉夫子之訓.”

51) 봉덕이의 기본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舊唐書』 권63, 『列傳』 13, 〈封倫〉, 2395-2398면(劉昫 等撰, 1975 北京: 中華書局出版); 『新唐書』 권100, 『列傳』 25, 〈封倫〉, 3929-3931면(歐陽修·宋祁 撰, 1975, 北京: 中華書局出版)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隋(581-619) 煬帝(재위 604-618) 시기 황제의 총애를 받던 虞世基(?-618)와 결탁해 정사를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唐(618-907) 초기 李建成(589-626)과 李世民(이후 太宗, 재위 626-649) 중 누구를 지지할지 틈을 엿보던 소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당 태종이 그를 右僕射에 임명했다는 사실을 이하 본문에서 영조와 정조는 주목했다. 『舊唐書』에 따르면 당 태종은 봉덕이가 사망한 후에야 그가 이견성과 자신 사이에서 형세를 엿보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한다.

급했다.⁵²⁾ 이처럼 군주 영조와 정조는 주희의 서간에서 유사하게 군주의 권한을 강조하는 논리를 읽어냈다.

옛날의 봉당은 깨뜨릴 수 없었지만, 오늘날의 봉당은 깨뜨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군자는 군자끼리 당을 만들고 소인은 소인끼리 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봉당을 깨뜨리고자 하면 군자는 반드시 그 해를 입게 되고 소인은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구양수가 「朋黨論」을 저술하여 임금이 봉당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으며, 范純仁(1027-1101)의 調停說을 주자가 비판한 것이다. 이것이 깨뜨릴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은 봉당이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단지 의리에 따라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 저쪽에도 是와 非가 모두 있고 이쪽에도 시와 비가 모두 있으며, 저쪽에도 군자와 소인이 모두 있고 이쪽에도 군자와 소인이 모두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 당을 깨뜨린 다음에야 군자를 모이게 할 수 있고 소인을 교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 그런데 혹자는 억지로 주자와 구양수의 남은 논리를 끌어다가 선대왕께서 皇極을 세우신 다스림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치우친 마음과 사사로운 견해를 고집해 옛날과 지금의 구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름 한 철을 사는 벌레에게 어떻게 얼음을 알려 줄 수 있겠는가.⁵³⁾

군주의 권능을 강조하는 정조의 견해는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皇極編』 「親撰序」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⁵⁴⁾ 정조는 황극만이 봉당론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봉당의 변천을 기록한 해당 서적의 서명을 『皇極編』으로 정했다고 자신의 의도를 밝혔다.⁵⁵⁾ 그는 이전의 봉당과 지금의 봉당은 현격하게 다른 존재로 구양수와 주희의 봉당론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해 정조가 주희와 구양수의 논의 자체를 배격했다기

52) 영조가 봉덕이를 언급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이동화, 2018 『영조 시기 宋代 朋黨論의 수용과 활용-주희 「與留丞相書」를 중심으로-』 『사림』 65, 17-19면.

53) 正祖, 『弘齋全書』 권180, 「羣書標記」 2, 〈皇極編〉, 親撰序 “曰古之朋黨不可破而今之朋黨可破也 何者 古則君子與君子爲黨 小人與小人爲黨 欲破其黨 則君子必受病 而小人必得志 故歐陽修著朋黨論 以爲人主惡黨者之戒 而范純仁調停之說 朱子非之 此其所以不可破也 今則其爲黨也 非君子小人也 特歧於議耳 彼亦一是非 此亦一是非 彼亦有君子有小人 此亦有君子有小人 必破其黨 然後君子可萃而小人可化 … 而或者強引朱子歐陽之緒論 而不能無憾於先大王建極之治 是則膠固於偏心私見 而不識夫古今之辨者也 夏蟲惡足以語冰哉.”

54) 李泰鎮, 1992 앞의 논문, 225-226면. 이후 이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55) 正祖, 『弘齋全書』 권180, 「羣書標記」 2, 〈皇極編〉 “噫 此編卽朋黨分爭之說也 奚以名皇極也 惟皇極可以破此說故名也.”

보다 그 논리를 억지로 활용하는 일부 인물들을 비판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정조는 주희의 정치사상 내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자신들에게 주장했다. 따라서 소인들 내에서 정밀하게 시비를 분별하고 그들을 교화까지 시킬 수 있는 군주의 권한 또한 주희 정치사상 내에서 도출될 수 있었다.⁵⁶⁾

자신이 주희의 붕당론을 상황의 변화에 맞게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정조의 정치사상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皇極編』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스스로 李浚慶(1499-1572)의 상소로 해당 서적을 시작하고, 趙文命(1680-1732)의 蕩平疏로 끝맺은 데 은미한 뜻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⁵⁷⁾ 이는 해당 서적의 「凡例」에서 이준경의 논의를 전체 강령으로, 조문명의 탕평소를 중심 주장으로 삼겠다고 언급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⁸⁾ 이준경은 선조 5년(1572) 죽음을 앞두고 남긴 遺疏 중 네 번째 조항에서 붕당 타파를 선조에게 건의했다.⁵⁹⁾ 그는 붕당의 형성으로 독서에 힘쓰지 않고 큰소리만 치는 당시 사대부들의 행실을 문제시했다. 이에 더해 이준경은 선조에게 붕당을 없애지 못하면 나라의 큰 화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러한 이준경의 붕당 타파설에 대해 이이는 붕당을 논한 상소를 올려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여기서 이이는 붕당의 존재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是非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⁰⁾ 이처럼 이준경은 이이의 붕당론에 일정 정

56) 崔誠桓, 2009 앞의 논문, 107-110면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57) 正祖, 『弘齋全書』 권180, 「羣書標記」 2, 〈皇極編〉, 親撰緣起 “作爲此編 而始之以故相李浚慶破朋黨之說 終之以故相趙文命蕩平之疏者 蓋有微意存焉.”

58) 『皇極編』 권1, 「凡例」, 1-2면 “一 茲編之哀集 蓋所以懲覆轍而錫庶極也 首揭故相臣李浚慶破朋黨之說 以爲全編之綱領 … 一 諸疏皆刪節典要 而獨故相臣趙文命蕩平一疏全篇取錄 以作編中之主宰.”

59) 『宣祖修正實錄』 권6, 선조 5년 7월 1일 甲申 “領中樞府事李浚慶卒 浚慶寢疾逾月 至疾甚 却醫曰 吾天祿已終 豈可服藥延活 第欲貢一言于吾君 口號草疏以進曰 四曰破朋黨之私 臣見今世之人 或有身無過舉 事無違則 而一言不合 排斥不容 其於不事行檢 不務讀書 而高談大言 結爲朋比者 以爲高致 遂成虛僞之風 君子則竝立而勿疑 小人則任置而同其流可也 此乃殿下公聽竝觀 務去此弊之時也 不然 終必爲國家難救之患矣.”

60) 이준경과 이이의 붕당론에 대해서는 鄭萬祚, 1990 「16世紀 士林系 官僚의 朋黨論」 『韓國學論叢』 12, 104-107면 참조.

도 상반되는 견해를 지니고 이른 시기 봉당의 타파를 주장한 인물이었다.

1798년(정조 22) 정조가 李秉模(1742-1806)와 나눈 대화는 『皇極編』의 첫 기사로 이준경을 수록한 정조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⁶¹⁾ 邪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며 이병모는 이이가 이준경을 배척한 것이 일견 지나친 듯도 하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이이가 저술한 『經筵日記』 내 논의들이 분명히 지나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만년설은 이준경과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⁶²⁾ 여기서 정조가 언급한 이이의 만년설은 이이가 1583년(선조 16) 4월에 올린 「陳時事疏」를 지칭한다. 해당 상소에서 이이는 調劑의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兩是兩非說에서 벗어나 분쟁적 사안에 대해 시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³⁾ 이후 그는 동인과 서인이라는 봉당을 배제하고 개인을 기준으로 시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⁴⁾ 개인을 기준으로 시비를 명확하게 분별해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교화시키자는 견해는 『皇極編』 서문의 주요 논지이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조는 이준경과 이이의 만년설이 결국에는 동일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는 정조의 이해에 따르면 두 견해가 모두 개인을 기준으로

61) 李愷東, 2019 『조선후기 정치·사상계의 栗谷 李珥 인식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7-208면에서도 해당 대화를 분석했다.

62) 『承政院日記』 1785책, 정조 22년 1월 15일 庚辰 “秉模曰聖教中 扶正學而邪學自息云者 誠至當矣 寅協二字 豈非好題目 … 自古小人之陷君子 人主之疑群下 皆在於此 故君子之於此 必也鄭重言之 如故相李浚慶之重望 而亦以此見斥於先正臣李珥 先正之言 雖似太過 細究其意 則實出於至誠惻怛矣 上曰 先正氣稟英發 而早立仕路 故此等年少時議論 未免辭鋒之太過 予則謂經筵日記之印行 亦非爲師諱之道矣 先正既有此論 而晚年所言 亦與故相之語無異 此雖緣時勢之不同 而故相之徒 或不能無雌黃之論 然至其寅協調劑之苦心 豈可誣哉.”(해당 일자의 『日省錄』 589책에도 같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정조와 이병모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이는 『經筵日記』에서 당시 大臣이었던 舊臣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신들을 ‘流俗’ 내지 ‘俗流’라고 지칭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래, 2015 『宣祖代 초반의 정국과 栗谷 李珥의 개혁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73-87면; 2019 「栗谷 李珥의 大臣論과 위기의식-『經筵日記』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88 참고.

63) 鄭萬祚, 1992 앞의 논문, 124-127면.

64) 이러한 이이 입장의 변화와 당시 정국에 대해서는 이정철, 2016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동서분당의 프레임에서 리더십을 생각한다』, 너머북스, 245-257면 참조.

엄정한 시비 분별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희의 서간에서 소인을 변화시키는 군주의 권능을 읽어냈던 정조의 독해 또한 이와 연계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조가 『皇極編』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던 조문명의 탕평소는 어떠한 주장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⁶⁵⁾ 『皇極編』 권9에 수록되어있는 조문명의 상소는 1721년(景宗 1) 5월 당시 副校理였던 조문명이 붕당의 폐단을 논하며 올린 글이다.⁶⁶⁾ 당시 조문명은 붕당의 폐해로 시비가 바르지 않음·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넓지 못함 등 모두 다섯 조목을 제시했다.⁶⁷⁾

무엇을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넓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당론이 생긴 이래로 문호를 나누고 갈라 어떤 사람은 등용하고 어떤 사람은 물러나게 하며, 이쪽 사람을 들어오게 하면 저쪽 사람은 나가게 하였습니다. 취하고 버리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선한가는 묻지 않고, 단지 의견이 자신과 같은가만 헤아릴 뿐입니다. ... 비록 모두 거두어 기르고 섞어 두루 등용해도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이 되는데, 이에 그 가운데에서 여러 번 나누어 그중 아홉은 버리고 그중 하나만 등용합니다. 주자께서 “蜀(221-263)이 삼국 가운데 작은데 또 서로 스스로 구분함이 마치 두 나라 같았다.”라고 하신 데 불행하게도 가깝습니다. ... 아! 붕당의 화가 옛날에도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대개 모두 어진 선비와 전도된 자의 구분이 명확하였습니다. 漢(後漢[25-220]을 지칭)의 南部·北部와 송의 원우·희령과 원풍 같은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의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우열이 그다지 다름이 없고, 음양과 흑백이 그다지 분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당을 들어 모두 등용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어진 사람은 아니며, 한 당을 들어 모두 버리더라도 반드시 모두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⁶⁸⁾

65) 正祖, 『弘齋全書』 권9, 『序引』 2, 〈鶴巖集序〉 “惟我先大王光御九五 建極爲治 萬品歸於陶鎔 四方湊於軌轍 時則有鶴巖趙文忠公 首進蕩平之疏.”라는 정조의 언급에 따르면 조문명의 탕평소는 1725년(영조 1) 10월 15일 同副承旨를 사직하며 올린 상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활용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皇極編』 판본에는 해당 시기 조문명의 상소가 수록되어있지 않다. 대신 이하 본문에서 다룬 『論朋黨疏』가 긴 분량으로 수록되어있다. 『皇極編』 『凡例』에서 전문을 수록한다고 언급한 『蕩平疏』가 판본에 따라 수록 여부가 다른 것인지 또는 『凡例』의 단순한 오기인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우선 이하에서는 『論朋黨疏』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66) 『景宗實錄』 권3, 경종 1년 5월 5일 乙丑 “副校理趙文命 疏論朋黨之弊.”; 『皇極編』 권9, 4-10면.

67) 이근호는 蕩平派의 사상과 활동을 분석하면서 조문명과 그가 올린 『論朋黨疏』를 고찰하였다. 이근호, 2016 『朝鮮後期 蕩平派와 國政運營』, 민속원, 51-58면과 197-198면 등.

위의 인용문은 조문명의 『論朋黨疏』 중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조문명은 봉당 내 모든 인물이 군자 또는 소인 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이이의 만년설과 동일하게 시비 판정의 기준을 개인에게 두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조문명이 주희의 발언을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문명이 인용한 주희의 발언은 주희가 1188년(淳熙 15)에 올린 『戊申封事』 중 일부이다.⁶⁹⁾ 당시 주희는 김(1115-1234)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당시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가 촉을 예시로 든 이유는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조문명이 상소에서 제시한 것과 정반대였다. 주희는 당시 조정이 공과 私, 즉 군자와 소인으로 나뉘어있으므로 집단에 따른 명확한 시비 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두 나라처럼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군자를 밖으로 몰아내고 조정을 장악한 소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⁷⁰⁾ 조문명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희의 발언을 본래 맥락과 다르게 활용했다. 이에 더해 정조는 자신의 의도

68) 『皇極編』의 해당 부분은 趙文命, 『鶴巖集』 3책, 『論朋黨疏』 · 『景宗實錄』에 수록된 『論朋黨疏』와 비교해 오기, 문자의 출입이 여럿 있으며 상당히 축약되어 있다. 따라서 국역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 작성하였다. 『皇極編』 권9, 5-6 · 9면 “奚謂用人不廣 自有黨論以來 分割門戶 進退出入 取捨銓衡之際 不問其人之善否 只計言議之異同 … 雖俱收并蓄 渾融通用 猶患不足 乃於其中 三分五裂 棄其九而用其一 朱子所謂以蜀之小於其中 又自分彼此如兩國然者 不幸近之矣 … 噫 朋黨之禍 古豈無之 然蓋皆賢士顛倒 其分絕然 若漢之南、北部 宋之元祐、熙、豐是也 … 惟今之黨則不然 善惡優劣 無甚異同 陰陽黑白 無甚分別 舉一黨盡用 未必皆賢 舉一黨盡棄 未必皆惡.”

69)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一)』, 『戊申封事』, 589-614면. 『戊申封事』의 국역은 (朱子思想研究會 옮김), 2011 『朱子封事』, 해안, 83-142면을 참고할 수 있다. 주희가 『戊申封事』를 올릴 당시 정국과 전후 상황은 수정난(김태완 옮김), 2015 『주자평전』 下, 역사비평사, 295-331면 참조.

70)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一)』, 『戊申封事』, 596면 “若以時勢之利害言之 則天下之勢合則疆 分則弱 … 當是之時 昭烈父子以區區之蜀抗衡天下十分之九 規取中原 以興漢室 … 夫以蜀之小 而於其中又以公私自分彼此如兩國 然則是將以梁、益之半圖吳、魏之全 又且內小人而外君子 廢法令而保姦回 使內之所出者日有以賊乎外 公之所立者常不足以勝乎私 則是此兩國者又自相攻 而其內之私者常勝 外之公者常負也 外有鄰敵之虞 內有陰邪之寇 日夜夾攻而不置 爲國家者 亦已危矣.”

에 맞게 이준경과 조문명을 『皇極編』 내에 배치했다.

『皇極編』은 붕당과 관련된 사건의 개요와 상소 등을 연대순으로 편집한 서적으로 편찬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과 관련해 李家煥(1742-1801)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가환의 從祖父인 李潛(1660-1706)은 1706년(숙종 32) 王世子(이후 경종)를 해치려는 무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강력한 상소를 올려 장살되었다. 따라서 노론 지식인의 관점에서 이잠은 왕세자를 단서로 노론 토역을 주장한 인물에 해당했다.⁷¹⁾ 1793년(정조 17) 종조부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논핵을 당하자 이가환은 이잠의 충심을 변호하며, 정조가 편찬을 명한 『皇極編』에 그 내용이 자세히 분석되어있다고 강조했다.⁷²⁾ 하지만 『皇極編』을 활용한 이가환의 주장은 현실 정치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金履素(1735-1798)는 숙종의 전교를 근거로 이잠이 분명히 역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⁷³⁾ 또한 그는 『皇極編』과 관련된 일은 조심스럽게 처리해야만 한다고 발언하며 아직 반포도 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⁷⁴⁾ 이에 대해 정조는 자신이 이잠의 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약간의 포폄을 붙였을 뿐 의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⁷⁵⁾

71) 李成茂, 2000 『星湖 李潛의 가계와 학통』 『韓國實學研究』 2, 10면.

72) 『正祖實錄』 권37, 정조 17년 1월 24일 戊午 “家煥以被人論劾 屢違召命 上疏曰臣於當世本無怨惡 而前後論臣者 斷斷不置 蓋以臣從祖事也 臣從祖臣潛 當時保護之疏 瀝血剖心 爲國願忠 以身殉志 列朝辨晰之教 昭在國乘 照映人目 且臣伏觀御定皇極編 歷敘事實 剖析無餘 蓋將永有辭於天下後世 何暇與彼輩 嘖嘖較挈也哉.” 이잠에 대한 내용은 『皇極編』 권7, 25-26면에 수록되어있다.

73) 『正祖實錄』 권37, 정조 17년 1월 25일 己未 “肅廟聖教有曰 潛則百倍於溥 此若尋常治之則必爲日後無窮之慮 所以親鞫 而終不承款而斃 世道至此 實國家之深慮也 又以溥罪當死而不正法 潛疏又出 潛之陰凶叵測 決非一人所爲 仍命更鞫溥賊 夫施典刑.”

74) 『日省錄』 422책, 정조 17년 1월 27일 辛酉 “至於御定文字事面 何等敬謹 而況是未頒行之書 則渠敢籍此爲說 有若取證者然 卽此一款 亦可見其放肆無忌憚之甚矣 臣謂亟下明旨嚴賜處分 施以重律 使人紀不墜 醜類知懼 有不可已也.”

75) 『正祖實錄』 권37, 정조 17년 2월 5일 戊辰 “右議政金履素曰 李家煥疏 千古所未有之變怪也 … 及當闡義昭鑑之撰定也 領府事金在魯 欲以南柳兩相及溥潛爲推本溯源之論 聖教截嚴三日却膳 … 然而予於此事 微寓褒貶 名以隄防 故沈煥之之疏 雖違令而頒之 不欲賜答 故李家煥之疏 以例批而略之 予之闡明之意 亦可見也 後有襲家煥而爲說者 則其所處分 當倍重於潛 予豈忽於義理也.”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조는 자신의 논리에 따라 주희를 포함한 이전 지식인들의 저작들을 읽어나갔다. 정조의 주장에 따르면 이준경·만년의 이이·조문명의 견해는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서문에서 밝혔듯 주희의 견해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대로 읽어낸다면 앞서 제시한 사람들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내적 논리성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 수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군주의 권한을 강조했던 『皇極編』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가환과 김이소의 논쟁은 이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4. 맺음말

본고는 18세기 후반 탕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군주로 평가받고 있는 정조의 정치사상을 주희의 봉당론과 연계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조가 주희의 정치 관련 저작들을 어떻게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독해했는지 분석하였다. 주지하듯이 정조의 정치사상을 다룬 많은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었다. 이 중 주희의 정치사상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정조 정치사상의 차이점을 부각한 연구들과 이와 달리 연계점을 강조한 성과들이 제출되었다. 본고는 연속성에 주목한 후자의 성과들을 토대로 정조의 주희 봉당론 활용에 더 집중하고자 했다. 규장각 각신들과 정조는 주희의 저작들 사이 존재하는 불일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희 서간의 특성은 독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희의 정치사상을 읽어냈던 독자로서 정조의 정치사상을 세밀하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주희 정치사상의 계승 여부를 넘어 구체적 독해와 활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조의 주장에 따르면 주희 봉당론 내 군자와 소인은 본래 공존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때때로 병립할 수 있었다. 정조는 주희와 송시열의 계승을 강조한 『兩賢傳心錄』의 경우 엄정하게 소인을 분별하는 것이 주희 봉당론의 요점이라고 이해했다. 정조가 심법의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던 주희의 『興留丞相書』와 송시열

의 『寄朴和叔書』는 모두 소인을 강하게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두 서간 모두 소인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소인의 형세만 돕는 행위로 인식했다. 『皇極編』 내 송시열과 윤희의 대립 그리고 윤희에게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윤선거의 처신과 관련된 논란이 다수 수록되어있다는 점은 정조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皇極編』에 수록된 이세덕의 원정은 정조가 『兩賢傳心錄』에서 언급했던 주희와 송시열을 함께 비판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이러한 논쟁들을 수록하며 오히려 소인을 엄정하게 비판했던 주희와 송시열의 계승을 강조했다.

소인은 물론 소인을 포용하려는 시도까지 배척한다면 소인의 교화 또는 일정 정도의 수용 가능성은 제기될 여지가 없어진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조는 주희 昉堂론 내 군자와 소인의 병존을 허용하는 측면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주희의 발언을 활용해 소인으로 상정되는 인물들 간에도 다시 엄정한 시비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인 내 일부 인사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견해였다. 이에 더해 정조는 그러한 소인들을 교화할 수 있는 군주의 권한에도 주목했다. 본문에서 언급한 봉덕이는 이전 군주였던 영조 또한 인용한 사례였다. 정조는 『皇極編』 서문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희와 구양수의 昉堂론을 제대로 독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독해에 따르면 이준경-만년의 이이-조문명의 정치사상은 개인에 기반한 시비분별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주장들이었다. 이처럼 정조는 『皇極編』이라는 저작을 통해 개인의 시비를 판정하고 그들을 교화하는 군주의 권한을 강조하고자 했다.

상대적으로 서간, 어록과 같은 자료는 당시 대화가 이루어지던 구체적인 상황 또는 맥락에 더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다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각신들과 정조는 주희 서간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정조의 주자학 비판은 주자학을 배척하거나 초월하려는 시도였다기보다 그 자체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이는 주희의 정치사상에 대한 정조의 독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주희의 정치사상 내에 군자와 소인을 엄정하게 분별하는 일면 뿐만 아니라 포용하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 독

해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주희의 평생 공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독자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皇極編』을 통해 주희는 물론 이준경-만년의 이이-조문명까지 연계해 이해하는 정조의 독해는 그의 논리에 따르자면 주희의 정치사상을 시대에 맞게 읽어낸 결과였다.

정조의 정치사상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그가 주장했던 탕평과 주희 봉당론의 관계 또한 구체적 독해와 활용 사례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주희의 정치사상을 일면적으로 배척 또는 계승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의 식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독해하는 행위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공통된 현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본고는 18세기 후반의 군주인 정조의 특정 정치사상만을 다루었으므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전반적인 정치사상을 평가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후 군주가 아닌 18·19세기 지식인들의 주희 봉당론 이해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주제어 : 正祖, 朱熹, 朋黨論, 皇極編, 독해

투고일(2020. 6. 16), 심사시작일(2020. 7. 9), 심사완료일(2020. 8. 1)

〈Abstract〉

King Jeongjo's Reading and Application of Zhu Xi's Factionalism

Lee Donghwa *

This paper examined the political ideas of King Jeongjo, who is regarded as a king who actively pursued Tangpyeong policies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with regard to Zhu Xi's factionalism.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Jeongjo's critical reading of Zhu Xi's books on politics. Many studies have analyzed Jeongjo's political ideas in the past. While some researchers have identified the difference between Jeongjo's political ideas with that of Zhu Xi, others focused on the connections between them.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latter studies that focused on the continuity, this paper placed emphasis on how King Jeongjo applied Zhu Xi's theories. King Jeongjo and the Kyujanggak officers were well aware of the inconsistency in Zhu Xi's works. Zhu Xi's letters were written to encourage multiple interpretations from the readers. To fully shed light on the political ideas of King Jeongjo, who was a reader who fully understood Zhu Xi's political ideas, it is important to go further than discussing whether he was a successor of Zhu Xi's ideas and to analyze King Jeongjo's detailed reading and application of Zhu Xi.

Key Words : King Jeongjo, Zhu Xi, factionalism, Hwanggeukpyeon, reading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